



제 10 차 WTO 각료회의  
나이로비, 2015.12.15-18

국문: 번역본

### 정보기술제품 무역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

나이로비, 2015 년 12 월 16 일

1. 다음의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을 대표하는 우리 각료들은

- |        |                          |
|--------|--------------------------|
| 알바니아   | 말레이시아                    |
| 호주     | 모리셔스                     |
| 캐나다    | 몬테네그로                    |
| 중국     | 뉴질랜드                     |
| 콜롬비아   | 노르웨이                     |
| 코스타리카  | 필리핀                      |
| 유럽연합   | 싱가포르                     |
| 과테말라   | 스위스 <sup>1</sup>         |
| 홍콩, 중국 | 개별 관세영역인 대만, 평후, 진먼 및 마조 |
| 아이슬란드  | 태국                       |
| 이스라엘   | 미국                       |
| 일본     |                          |
| 한국     |                          |

(이하 “참가국”이라 한다) 정보기술제품 무역확대에 관한 선언문<sup>2</sup> (이하 “선언문”이라 한다)을 상기 및 지지하고, 선언문 제 9 항에 따른 수락을 위하여 공람하며, 선언문에 제시된 대로 결론을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 참가국은 각 참가국이 제출하였고 컨센서스 방식으로 검토 및 승인된 G/MA/W/117<sup>3</sup>의 양허표에 반영된 대로, 선언문 제 5 항에 기술된 검토과정 결과를 승인한다.
- 참가국은 선언문 제 7 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승인된 양허표가 선언문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의 세계교역의 약 90 퍼센트를 나타낸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서 각 참가국은 선언문 제 3 항과 제 6 항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제의무수락에 필요한 절차를 포함할 수 있는 국내 절차요건의 이행에 따라 승인된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 관세철폐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참가국이 선언문 제 3 항과 제 6 항을 이행한 후, 회원국들은 최소발효요건의 맥락에서 미래의 무역변화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논의의 어떠한 결과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해당사항을 논의할 적절한 기회를 가진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 참가국은 선언문 제 9 항을 상기하면서, 선언문의 당사국이 아닌 어떠한 WTO 회원국이라도 선언문의 약속이행을 수락하고 선언문의 당사국이 될 것임을 WTO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를 환영한다.

<sup>1</sup>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관세동맹을 대표함

<sup>2</sup> 2015 년 7 월 28 일, WT/L/956(첨부)

<sup>3</sup> 공개 예정

부속서



WORLD TRADE ORGANIZATION

WT/L/956

2015.7.28

(15-3896)

Page: 2/11

일반이사회

국문: 번역본

정보기술제품 무역확대에 관한 선언문

유럽연합에서의 협의

다음의 2015년 7월 28일자 협의 내용은 유럽연합 대표단의 요청으로 회람될 예정이다.

정보기술제품의 세계무역확대에 동의한 다음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당사국")은

알바니아	말레이시아
호주	몬테네그로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필리핀
유럽연합	싱가포르
과테말라	스위스 <sup>1</sup>
홍콩, 중국	개별 관세영역인 대만, 평후, 진먼 및 마조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태국
일본	미국
한국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2조제 1항(b)호의 의미 내에서, 다음의 물품에 관한 관세와 그 밖의 조세 및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양허 및 철폐한다.
  - (가) 이 선언문 첨부 A에 2007년도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소호로 분류된 모든 물품, 그리고
  - (나) 첨부 A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선언문 첨부 B에 명시된 모든 물품

<sup>1</sup>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관세동맹을 대표함

**양허단계**

2. 당사국들은 2016 년에 시작하여 2019 년 종료까지 3 년간 4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는 것을 표준 양허단계로 적용하며,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한된 상황에서 감축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각 양허단계별 감축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로 반올림한다. 각 당사국은 각 물품의 양허단계에 한 약속을 「1994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양허표(“양허표”)에 통합한다.

**이행**

3.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국내 절차요건의 완료를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첨부에 열거된 물품에 대해 모든 관세 및 그 밖의 조세와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다음과 같이 철폐한다.
  - (가) 관세는 균등감축 방식으로 철폐되며, 첫 번째 세율감축은 2016년 7월 1일까지, 두 번째 세율감축은 2017년 7월 1일까지, 세 번째 세율감축은 2018년 7월 1일까지 이행되고, 관세철폐는 2019년 7월 1일까지 이행되어 완료된다. 그리고
  - (나) 그 밖의 조세와 모든 종류의 부과금 철폐는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제1항(b)호의 의미 내에서 2016년 7월 1일 까지 완료된다.

**이행의 가속화**

4. 당사국들은, 예를 들어 비교적 관세가 낮은 물품 등에 대해서, 상기 제 3 항에 규정된 날 전에 자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이행을 가속화하도록 장려한다.

**기간의 설정**

5.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그리고 2015년 10월 30일까지 각 당사국은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가)자국 양허표에 규정되는 적절한 관세대우방식에 대한 세부내용과, (나)첨부 B에 명시된 물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HS소호 리스트로서 그러한 물품이 해당 HS에 분류되는 경우 무관세대우를 받을 것을 명시하는 두주를 포함하는 양허표 초안을 제공한다. 당사국들은 협상 중 당사국들이 표명했던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컨센서스 방식으로 각 양허표 초안을 검토 및 승인한다. 이 검토 과정은 2015년 12월 4일까지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6. 이 검토절차가 당사국의 양허표 초안에 대하여 완료된 후, 그 당사국은 「양허표 수정절차에 관한 1980년 3월 26일 결정(BISD 27S/25)」에 따라 국내 절차요건의 완료를 조건으로 자국의 승인된 양허표를 자국의 양허표 수정안으로서 제출한다.
7. 각 당사국은 이 선언문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의 세계교역의 약 90 퍼센트<sup>2</sup>를 나타내는 양허표 초안을 당사국들이 컨센서스 방식으로 검토 및 승인하면, 이 선언문의 제3항과 제6항을 이행한다.

**양허표 초안 양식**

8. 첨부에 열거된 모든 종류의 물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그리고 모든 종류의 부과금에 대한 자국의 양허 및 철폐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국 양허표에 대한 각 당사국의 수정은

<sup>2</sup>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WTO 사무국이 산정하고 당사국들에 전달 예정

- (가) 첨부 A에 열거되고 HS 2007 소호로 분류된 물품의 경우, 적절한 경우, 국가 품목분류를 기준으로 자국의 양허표에 하위 구분을 만든다. 그리고
- (나) 첨부 B에 열거된 물품의 경우, 첨부 B에 있는 모든 물품을 포함하는 자국의 양허표에 부속서를 첨부하여, 국가 품목분류기준 또는 HS 6단위 기준으로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상세 세번을 명시한다.

### **수락**

9. 이 선언문은 모든 WTO 회원국의 수락을 위하여 공람된다. 수락은 WTO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어, 모든 당사국에게 전달된다.

### **비관세장벽**

10. 당사국들은 정보기술분야의 비관세장벽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는 데 합의한다. 이와 동일한 취지로, 당사국들은 비관세장벽에 관한 향상된 작업 프로그램의 가능한 개발을 지원한다.

### **최종 고려**

11. 당사국들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세계관세기구에 의한 HS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정기적 개정이 있기 최소 1년 전, 그리고 2018년 1월 전에, 이 첨부들에 명시된 물품의 범위를 검토하고, 기술개발·양허관세 적용경험 또는 HS품목분류표 수정 등의 관점에서, 이 첨부들이 추가 물품을 통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12. 당사국들은 이 협상의 결과가 도하개발아젠다의 틀 안에서 진행 중인 다자간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양허를 포함하여야 함을 인정한다.

### **이 선언문의 첨부:**

- 첨부 A는 이 선언문의 적용대상이 되는 HS 2007 소호 또는 그 부분을 열거한다.
- 첨부 B는 HS 2007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이 선언문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물품을 열거한다.

## 첨부 A

물품번호	HS 2007	ex *	품명
001	350691	ex	광학용 투명 접착 필름 접착제와 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감지 스크린 패널(touch-sensitive screen panels)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002	370130		그 밖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3	370199		기타
004	370590		기타
005	370790		기타
006	390799	ex	열가소성의 액정 방향족 폴리에스테르 공중합체
007	841459	ex	팬(마이크로프로세서, 전기통신용 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냉각을 위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008	841950	ex	열교환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내경이 3 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09	842010	ex	롤 라미네이터(Roll laminators)(인쇄회로기판이나 인쇄회로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010	842129	ex	액체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11	842139	ex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 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12	842199	ex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분품,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 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분품
013	842320	ex	컨베이어용의 연속계량식 저울(중량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14	842330	ex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하며, 중량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15	842381	ex	그 밖의 중량측정기기(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중량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16	842382	ex	그 밖의 중량측정기기(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초과, 5,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중량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는 제외한다)
017	842389	ex	그 밖의 중량측정기기(최대 측정용량이 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중량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18	842390	ex	저울 부분품(중량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019	842489	ex	분사용·살포용 또는 분무용의 기기(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020	842490	ex	분사용·살포용 또는 분무용의 기기(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분품
021	844230		기계류·장치·장비
022	844240		위의 기계류·장치·장비의 부분품
023	844250		플레이트·실린더 및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024	844331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 복사,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025	844332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

물품번호	HS 2007	ex *	품명
026	844339		기타
027	844391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28	844399		기타
029	845610	ex	레이저 또는 그 밖의 광선 또는 광자빔 방식의 공작기계(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 8517 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030	846693	ex	레이저 또는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의 공작기계(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 8517 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분품과 부속품, 초음파 방식의 공작기계(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 8517 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분품과 부속품, 머시닝센터(제 8517 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분품과 부속품, 수치제어식(그 밖의 선반)(제 8517 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분품과 부속품, 수치제어식(그 밖의 드릴링 머신)(제 8517 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분품과 부속품, 수치제어식(그 밖의 밀링 머신)(제 8517 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분품과 부속품, 톱기계 또는 절단기(제 8517 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분품과 부속품, 방전방식의 공작기계(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 8517 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분품과 부속품
031	847210		등사기
032	847290		기타
033	847310		제 8469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34	847340		제 8472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35	847521		광섬유 및 광섬유 예비 성형품 제조용 기계
036	847590	ex	소호 제 8475.21 호의 기계의 부분품
037	847689	ex	화폐 교환기
038	847690	ex	화폐 교환기의 부분품
039	847989	ex	전자부품 자동장착기(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040	847990	ex	전자부품 자동장착기(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분품
041	848610		보울(boule) 또는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042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043	8486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044	848640		이 류의 주 제 9 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045	848690		부분품 및 부속품
046	850440		정지형 변환기
047	850450		그 밖의 유도자
048	850490		부분품
049	850590	ex	전자석(자기공명 촬영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하며 제 9018 호의 전자석은 제외한다)

물품번호	HS 2007	ex *	품명
050	851430	ex	그 밖의 노(爐)와 오븐(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051	851490	ex	그 밖의 노(爐)와 오븐(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분품
052	851519	ex	그 밖의 침적 납땜용(wave soldering) 기계(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053	851590	ex	그 밖의 침적 납땜용(wave soldering) 기계(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분품
054	851761		기지국
055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056	851769		기타
057	851770		부분품
058	85181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059	851821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60	851822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61	851829		기타
062	851830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063	851840		가청주파증폭기
064	851850		음향증폭세트
065	851890		부분품
066	851981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067	851989		기타
068	852110		마그네틱 테이프형
069	852190		기타
070	852290		기타
071	852321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
072	852329		기타
073	852340		광학식 매체
074	852351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075	852352		스마트카드
076	852359		기타
077	852380		기타
078	852550		송신기기
079	85256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080	852580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081	852610		레이더기기
082	852691		항행용 무선기기
083	852692		무선원격조절기기
084	852712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085	852713		그 밖의 기기(음성기록기나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086	852719		기타

물품번호	HS 2007	ex *	품명
087	852721	ex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자동차용으로 외부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음성기록 또는 재생 기기(디지털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의 수신과 디코딩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결합기기
088	852729		기타
089	852791		음성기록기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090	852792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091	852799		기타
092	852849		기타
093	852871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지 아니한 것
094	852910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095	852990	ex	기타(소호 제 8528.72 호 또는 제 8528.73 호의 기기용 유기발광다이오드 모듈과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은 제외한다)
096	853180	ex	그 밖의 기기(도어벨, 차임, 버저와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097	853190		부분품
098	853630		전기회로보호용의 그 밖의 기기
099	853650		그 밖의 개폐기
100	853690	ex	그 밖의 기기[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 또는 제 8711 호의 자동차용 배터리 클램프(battery clamp)는 제외한다]
101	853810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 8537 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102	853939	ex	평판디스플레이의 후면광원(backlighting)용 냉음극형광램프(CCFLs)
103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럭(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104	854232		메모리
105	854233		증폭기
106	854239		기타
107	854290		부분품
108	854320		신호발생기
109	854330	ex	전기도금·전기분해 기기(인쇄회로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110	854370	ex	유선전신용이나 유선전화용 기기 또는 유선전신용이나 유선전화용 통신망 연결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제품
111	854370	ex	마이크로웨이브 증폭기
112	854370	ex	비디오게임 콘솔용 무선 적외선 원격조절장치
113	854370	ex	디지털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114	854370	ex	휴대용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자 리더기(문자, 정지화상 또는 음성파일의 기록 및 재생용으로 한정한다)
115	854370	ex	디지털신호처리기(사운드 믹싱을 위해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16	854390		부분품
117	880260	ex	전기통신용 인공위성
118	880390	ex	전기통신용 인공위성의 부분품
119	880521		모의 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120	880529		기타
121	90012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122	900190		기타



물품번호	HS 2007	ex *	품명
123	900219		기타
124	900220		필터
125	900290		기타
126	90105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그 밖의 기기와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127	901060		영사용 스크린
128	901090	ex	소호 제 9010.50 호 및 제 9010.60 호의 제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129	901110		입체현미경
130	901180		그 밖의 현미경
131	901190		부분품과 부속품
132	901210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133	901290		부분품과 부속품
134	901310	ex	이 류나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135	90132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136	901390	ex	부분품과 부속품(무기의 망원조준기용 또는 잠망경용의 것은 제외한다)
137	901410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138	901420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139	90148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140	901490		부분품과 부속품
141	901510		거리측정기
142	901520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143	901540		사진측량기기
144	901580		그 밖의 기기
145	901590		부분품과 부속품
146	901811		심전계
147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148	901813		자기공명 촬영기기
149	901819		기타
150	90182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151	901850		안과용 그 밖의 기기
152	901890	ex	전기식 외과용 기기나 전기식 의료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53	90215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154	902190		기타
155	902212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156	902213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157	902214		기타(내과용 · 외과용 · 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158	902219		그 밖의 용도의 것
159	902221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
160	902229		그 밖의 용도의 것
161	902230		엑스선관
162	902290	ex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163	902300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164	902410		금속재료 시험기기
165	902480		그 밖의 기기

물품번호	HS 2007	ex *	품명
166	902490		부분품과 부속품
167	902519		기타
168	902590		부분품과 부속품
169	90271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170	902780		그 밖의 기기
171	902790		마이크로톰(microtome)과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172	902830		전기용 계기
173	902890		부분품과 부속품
174	90301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175	90302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176	903031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177	903032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178	903033	ex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저항측정기기는 제외한다)
179	903039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80	903084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81	903089		기타
182	903090		부분품과 부속품
183	903110		균형시험기
184	903149		기타
185	903180		그 밖의 기기
186	903190		부분품과 부속품
187	903220		매노우스타트(manostat)
188	903281		액압식이나 공기식
189	95041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90	950430	ex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와 금전적 보상을 즉시지급하는 사행성 게임용구는 제외한다)
191	950490	ex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 9504.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소호는 "ex"기호로 표시된다.

## 첨부 B

192	<p><b>복합부품 집적회로(MCO)</b></p> <p>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실리콘 소재 센서, 액추에이터(actuators), 오실레이터(oscillators), 공진기(resonators) 또는 그 결합물, 또는 제 8532 호, 제 8533 호, 제 8541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나 제 8504 호에 분류되는 유도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이들은 집적회로와 같이 사실상 분리 불가능하게 단일체로 형성되었고, 핀, 리드, 볼, 랜드, 범프 또는 패드로 접속되어 인쇄회로 기판(PCB) 또는 다른 매개체에 조립되기 위한 부품이다.</p> <p>이 정의의 목적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부품"은 개별부품일 수도 있고, 별도로 제조되어 복합부품 집적회로의 나머지 부분 위에 조립되거나 다른 구성부품에 집적될 수 있다.</li> <li>2. "실리콘 기반"은 실리콘 기판 위에 조립되었거나, 실리콘 재료로 제작되었거나, 또는 집적회로 다이(die) 위에 제조된 것을 말한다.</li> <li>3(가). "실리콘 기반 센서"는 마이크로전자 또는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것으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 양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전기적 속성의 변화 또는 기계구조 변위의 결과로 발생)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물리적 또는 화학적 양"은 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 농도 등 실제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li> <li>3(나). "실리콘 기반 액추에이터(actuators)"는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생성되고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부품이다.</li> <li>3(다). "실리콘 기반 공진기(resonators)"는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생성되고 외부 신호에 반응하여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부품이다.</li> <li>3(라). "실리콘 기반 오실레이터(oscillators)"는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생성되고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능동 부품이다.</li> </ol>
193	<p><b>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 모듈</b>[하나 이상의 발광다이오드(LED), 하나 이상의 커넥터로 구성된 광원으로, 인쇄회로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와 그 밖의 수동 부품에 장착되며, 광학소자 또는 보호형 다이오드와의 결합 여부 및 액정 디스플레이(LCD) 백라이트 조명장치로의 사용 여부에 상관없다]</p>
194	<p><b>터치 감지 입력 장치(소위 '터치 스크린'이라 한다)</b>(디스플레이 기능이 없고, 디스플레이가 있는 기기와의 결합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며, 디스플레이 영역 내에서 터치의 유무와 위치를 감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한다. 터치의 감지는 저항, 정전 용량, 음향 펄스 인식, 적외선 또는 그 밖의 터치 감지 기술에 의해 얻을 수 있다)</p>
195	<p><b>잉크 카트리지</b>(통합 프린트 헤드에 있는지에 상관없다)(소호 제 8443.31 호, 제 8443.32 호 또는 제 8443.39 호의 기기 삽입용 및 기계나 전기 부품 결합용으로 한정한다), 열가소성 또는 정전식의 토너 카트리지(가동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소호 제 8443.31 호, 제 8443.32 호 또는 제 8443.39 호의 기기 삽입용으로 한정한다), 고체 잉크(조작된 형태의 것으로, 소호 제 8443.31 호, 제 8443.32 호 또는 제 8443.39 호의 기기 삽입용으로 한정한다)</p>
196	<p><b>인쇄물</b>[소프트웨어(게임을 포함한다), 데이터, 인터넷 콘텐츠(인게임 또는 인어플리케이션 콘텐츠를 포함한다) 또는 서비스, 또는 통신 서비스(모바일 서비스를 포함한다)의 접속, 설치, 복제 또는 그 밖의 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p>
197	<p><b>접착성 원형 폴리싱용 패드</b>(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p>
198	<p><b>상자 · 케이스 · 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b>(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소호 제 3923.10 호 또는 제 8486.90 호에 해당하는 반도체 웨이퍼, 마스크 또는 레티클의 수송이나 포장에 적합하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p>
199	<p><b>진공펌프</b>(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p>
200	<p><b>플라즈마 클리너 머신</b>(전자현미경 검사 시료와 시료홀더의 유기오염물 제거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p>
201	<p><b>휴대용 양방향 전자 교육 장비</b>(주로 어린이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p>

\*\* 인쇄물에 대한 관세철폐는 상품무역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만 영향을 미친다. 즉, 당사자의 관세 이외의 시장 접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ITA 확대의 어떠한 규정도 ITA 회원국이, 특히 인터넷 콘텐츠를 포함한, 그러한 상품의 콘텐츠를 규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ITA 확대의 어떠한 규정도 서비스 무역에 관한 회원국의 시장접근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원국의 자국 서비스 시장 규제를 금지하지 아니한다.